

공무원 급여 핵심포인트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이은하

나이스 급여 업무 처리 순서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11	GCAM02	기술정보가산금(가산 업기사)	15	300,000	15	300,000	0	0
12	GN0053	기술정보가산금(나.6 7급)	4	40,000	4	40,000	0	0
13	GN0052	기술정보가산금(나.6 급이하)	1	20,000	1	20,000	0	0
14	GN0054	기술정보가산금(나.8 급 이하)	2	40,000	2	40,000	0	0
15	GCAL01	기술정보수당(5급이상)	9	450,000	9	450,000	0	0
16	GCAL02	기술정보수당(6,7급)	63	1,890,000	63	1,890,000	0	0
17	GCAL03	기술정보수당(8급이하)	7	140,000	7	140,000	0	0
18	GB0017	대우공무원수당	159	23,853,600	161	24,130,520	-2	-276,920
19	GB0023	명절휴가비	0	0	2	164,760	-2	-164,760
20	GB0019	모범공무원수당	25	1,250,000	25	1,250,000	0	0
21	GCAD08	보전수당(교감, 장학, 연구4,5)	39	390,000	39	390,000	0	0
22	GCAD07	보전수당(교장, 장학, 연구1,2,3)	2	140,000	2	140,000	0	0
23	GA0001	본봉	468	1,841,657,860	466	1,839,358,110	2	2,299,750
24	GN0048	시간외근무수당(정액 분)	523	66,683,310	523	65,636,180	0	1,047,130

[공무원 급여- 수당계산내역-수당집계내역(전월비교)]

- 전월 급여와 해당 월의 급여를 비교할 수 있는 메뉴
- 본봉 및 연봉월액 대상자 인원을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 인사변동자의 수당내역 확인 용이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2024.11.15

일할계산내역

급여작업월 : 2024 년 11 월 기관 : 시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성명	수당명	구분	기본 수당금액	검액후 수당금액	실지급액	차액 (소급액)	이전수당 지급여부	전월휴직	전월징계	전월 직위해제	발령1	발령2	발령3	무급휴가 일수	전체 일수						
								지급률	지급률	지급률	발령일 및 지급률	발령일 및 지급률	발령일 및 지급률								
								지급						30							
								7/10													
								지급						30							
								7/10													
								지급						30							
								7/10													
								지급						30							
								7/10													
								지급						30							
								0/1													

[공무원 급여- 수당계산내역-일할계산내역]

- 해당 월에 인사변동, 징계여부 등에 따라 나이스가 자동계산한 일할계산 내역을 볼 수 있는 메뉴
- 휴직에 따른 지급률, 무급휴가 일수 등을 확인 가능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2024.11.15

조정/기타 수당내역

급여작업월: 2024년 11월

순번	소속기관	부서	성명	급여구분	수당코드	수당명	수당금액	사유
1	경상남도교육청							
2	경상남도교육청							
3	경상남도교육청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급여- 수당계산내역-조정수당 및 기타수당내역]

- 해당 월에 작업한 조정수당 내역을 볼 수 있는 메뉴
- 휴직에 따른 지급률, 무급휴가 일수 등을 확인 가능
- 조정수당 반영시 **소급+당월** 금액 합계를 입력
- 개인수당에는 매월 나가는 수당 입력, 되도록이면 기타수당에는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수당명 입력시 기타수당이란 수당명은 없음, 소급이나 환수 반영할 시 각각에 맞는 수당명 입력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월급여대상자생성

급여연월: 2024-11 급여구분: 월급여(AA) 급여작업기관일괄변경적용 조회

※ 급여작업기관오류여부가 "Y"인 경우 급여작업기관일괄변경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 해결 가능.

Total 28 전월대상자 복사 일괄생성

급여작업기관	기관명	전체대상	상세	총생성건수	급여작업기관오류여부	대상자생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585	상세	584	N	생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덕유교육원	0	상세	0	N	생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6	상세	6	N	생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6	상세	26	N	생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청원도서관	35	상세	35	N	생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19	상세	19	N	생성
합계		1041		1042	0	

Total 100 급여작업이 마감되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전체출력 대상지추가 저장 삭제

[공무원 급여- 작업-대상자생성]

- 생성 후 상세 버튼을 눌러 대상자 확인
- 전월과 반드시 대상자 비교(엑셀파일 다운받아서)
- 지속적으로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급여 추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
- 대상자 중 전월 급여 소급할 건이 있을 경우 대상자생성 메뉴에서 소급 체크하면 소급분 자동 계산됨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지로파일생성

[...지로파일생성](#) [?](#) [💬](#) [📄](#) [📧](#) [📅](#) [☆](#) [축소](#)

*급여연월

2024-11

📅

급여구분

월급여(AA)

회계구분

전체

파일형식

길이로 구분(기존양식)

계약직여부

전체

대상기관

전체

오류내역

지로파일생성

🔍 조회

1 / 39 100% 📄 🖨️ 🔍 🔍 🔍

급여연월: 2024년11월

지로파일 내역서

2024.11.25

[공무원 급여- 작업-지로파일생성]

- 급여연월과 급여구분, 대상기관을 설정 후 조회
- 조회 후 오류내역을 클릭하여 급여 지급 계좌에 오류가 있는 대상자 확인
(신규 계좌 누락, 실지금액 마이너스 대상자 확인)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급여대장

🏠 > 일반행정, 학교행정 > {공무원급여}월급여 > 급여자료관리 > 급여대장

① *적용기간 2024-03 ~ 2024-03

기관

급여구분코드 월급여(AA)

수당구분 대표수당명

회계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출력구분 ☒ 개인별내역 ☐ 기관별내역

② ☒ 인원수

③ 🔍 조회

수당 / 공제명 Total 15 Total 14

④ ☒	순번	수당명
☒	1	본봉
☒	2	정근수당가산금
☒	3	정근수당추가가산금
☒	4	대우공무원수당
☒	5	정액급식비
☒	6	직급보조비

⑤ ☒	순번	공제명
☒	1	소득세
☒	2	지방소득세
☒	3	연말정산소득세
☒	4	연말정산지방소득세
☒	5	일반기여금
☒	6	건강보험

급여대장 출력폰트 중(6p)

급여총괄표 양식 세로

☐ 부서출력여부

⑦ 📄 엑셀파일출력

급여대장출력

급여총괄표

*작업기간 2024-08-01 ~ 2024-08-01

조회

☐	작업번호	작업명	작업상태	시작시간	종료시간	처리시간	처리건수	상태메세
☐	82642	202403~202403 급여대장생성	완료	2024-08-01 13:31:58	2024-08-01 13:31:58	00분00초	12	장생성 :S100000502:대표수당명:교육비특별회계:개인별:급여대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기관분류	기관명	개인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종	직급	호봉	근무년수	본봉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정액급식비
			000		교원				4,392,000	80,000	0	0	140,000
			000		교원				3,625,800	60,000	0	0	140,000
					교원				40,044,700	740,000	120,000	0	1,120,000
					교원 (인원)				8	8	6	0	8
			000		행정직				2,263,400	50,000	0	0	140,000
					행정직				6,749,900	150,000	30,000	183,940	280,000
					행정직 (인원)				2	2	1	1	2
			000		기간제교원				3,502,200	60,000	0	0	140,000
			000		기간제교원				2,384,200	30,000	0	0	140,000
					기간제교원				5,886,400	90,000	0	0	280,000
					기간제교원 (인원)				2	2	0	0	2
					전체				52,681,000	980,000	150,000	183,940	1,680,000
					전체 (인원)				12	12	7	1	12
전체					교원				40,044,700	740,000	120,000	0	1,120,000
전체					교원 (인원)				8	8	6	0	8
전체					행정직				6,749,900	150,000	30,000	183,940	280,000
전체					행정직 (인원)				2	2	1	1	2
전체					기간제교원				5,886,400	90,000	0	0	280,000
전체					기간제교원 (인원)				2	2	0	0	2
전체					전체				52,681,000	980,000	150,000	183,940	1,680,000
전체					전체 (인원)				12	12	7	1	12

알아두면 좋은 나이스 급여 메뉴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일반기여금	건강보험	건강보험휴직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휴직정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교직원공제회비	대여학자금	교원연합회비	수당총액	공제총액	지급총금액
19,910	0	0	507,410	204,380	118,680	26,460	15,160	0	0	120,000	0	0	4,922,000	1,211,120	3,710,880
23,860	0	0	438,710	173,700	0	22,490	0	0	0	60,000	0	0	5,431,890	957,440	4,474,450
387,940	-2,191,950	-219,150	3,168,980	1,864,440	118,680	241,420	15,160	0	0	6,666,250	0	17,000	48,241,530	13,948,430	34,293,100
8	3	3	6	8	1	8	1	0	0	8	0	1	8	8	8
9,140	-276,860	-27,670	276,340	108,970	0	14,110	0	0	0	120,000	0	0	3,189,610	315,490	2,874,120
54,900	-684,630	-68,430	865,590	332,540	0	43,060	0	0	0	1,609,850	189,000	0	8,858,810	2,890,940	5,967,870
2	2	2	2	2	0	2	0	0	0	2	1	0	2	2	2
19,590	0	0	0	155,980	0	20,200	0	198,000	39,600	0	0	0	4,212,200	629,330	3,582,870
7,300	0	0	0	106,350	0	13,770	0	135,000	27,000	0	0	0	3,079,200	362,480	2,716,720
26,890	0	0	0	262,330	0	33,970	0	333,000	66,600	0	0	0	7,291,400	991,810	6,299,590
2	0	0	0	2	0	2	0	2	2	0	0	0	2	2	2
469,730	-2,876,580	-287,580	4,034,570	2,459,310	118,680	318,450	15,160	333,000	66,600	8,276,100	189,000	17,000	64,391,740	17,831,180	46,560,560
12	5	5	8	12	1	12	1	2	2	10	1	1	12	12	12
387,940	-2,191,950	-219,150	3,168,980	1,864,440	118,680	241,420	15,160	0	0	6,666,250	0	17,000	48,241,530	13,948,430	34,293,100
8	3	3	6	8	1	8	1	0	0	8	0	1	8	8	8
54,900	-684,630	-68,430	865,590	332,540	0	43,060	0	0	0	1,609,850	189,000	0	8,858,810	2,890,940	5,967,870
2	2	2	2	2	0	2	0	0	0	2	1	0	2	2	2
26,890	0	0	0	262,330	0	33,970	0	333,000	66,600	0	0	0	7,291,400	991,810	6,299,590
2	0	0	0	2	0	2	0	2	2	0	0	0	2	2	2
469,730	-2,876,580	-287,580	4,034,570	2,459,310	118,680	318,450	15,160	333,000	66,600	8,276,100	189,000	17,000	64,391,740	17,831,180	46,560,560
12	5	5	8	12	1	12	1	2	2	10	1	1	12	12	12

나이스 작업시 확인 사항

- 초과근무 수정, 인사자료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기초자료 다시 생성
- 매월 인사변동자 조회하여 휴,복직, 승급사항 확인
- 대상자 생성시 전월 비교하여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특히, 인사변동시기 많은 3월 주의)
- 급여대장 생성하여 본봉 0원, 연봉월액 0원, 육아휴직수당 0원으로 필터걸어서
무급휴직인 자 제외하고 급여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 공제총액 150만원~300만원 사이 조회하여 과도한 공제가 없는지 확인(특히 보험료
정산시기)
- 퇴직교직원 대상자 소급작업시 기존 공제금 공제되지 않도록 확인

나이스 작업시 확인 사항

[공무원 개인수당에 입력해야하는 수당]

구분	수당명		수당코드	수당금액	비고
상여	대우수당가산금		GB0018	100,000	필수요원지정(인사발령)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GCAV01/02/05	60,000/50,000/40,000	갑/을/병
	특수업무수당	1. 원로교사	GCAH01	50,000	교육경력30년,55세이상
		3-4. 방통검직	GCAH25	50,000	
		5. 실과담당	GN00, GCAH05	25,000~50,000	호봉따라 상이
		5. 실과담당가산금	GGCI01	10,000	
		7. 병설. 통합학교겸임	GCAH21(교장) GN0013(교감)	100,000 50,000	겸임기관수가 3개 이상이더라도 금액 변동없음

나이스 작업시 확인 사항

[공무원 개인수당에 입력해야하는 수당]

구분	수당명			수당코드	수당금액	비고	
특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연수 기관 (파견시 지급)	GN0004/06 GN0007	110,000/100,000 80,000	연수기관 원장/부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 육연구사. 교사	
		기술정보수당	기술	GCAL01/02/03	50,000/30,000/20,000	5급이상/6~7급/8~9급	
			전산	GCAJ01/02/03	50,000/30,000/20,000	3년이상/1년이상/1년미만	
		기술정보가산금	가	GCAM00/01/02	50,000/30,000/20,000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나	GN0053/54	10,000/20,000	운전6~7급/운전8~9급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			GN0104	30,000	6급이하
		중요직무급			GN0101	100,000	교감

나이스 작업시 확인 사항

[공무원 개인수당에 입력해야하는 수당]

구분	수당명	수당코드	수당금액	비고
조례	도서벽지수당	GCAA01/02/03/04	60,000/50,000/40,000/30,000	가/나/다/라
지침	겸임수당	GN0105	50,000	병설, 통합겸임 지방공무원

- 소급, 당해연도 환수, 미지급시 조정수당 입력 (조정수당은 휴직 등 인사변동에 따른 감액이 자동반영되지 않음)
 - ※ 기술정보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가능
 - ※ 기술정보수당은 학교운영수당과 병급 불가(학교운영수당과 기술정보가산금 또한 병급불가)
- 「기술정보가산금_나」운전직렬만 지급
 - ☞ 그 외 기술직렬 지급불가, 명확한 지급대상 구분을 위해 2025.12.부터 수당명"운전"추가

정근수당

- 지급시기: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1,7월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이 1,7월 1일부터 6월 30일,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라도 근무기간 인정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 근무연수는 5년으로 고정

정근수당

근 무 연 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10%	7년 미만	30%
2년 미만	10%	8년 미만	35%
3년 미만	20%	9년 미만	40%
4년 미만	20%	10년 미만	45%
5년 미만	20%	10년 이상	50%
6년 미만	25%		

-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 지급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가산금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추가가산금	25년 이상	30,000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10,000원

정근수당

Q. 육아휴직(2024. 7. 8.~2024. 12. 22.) 후 복직(2024. 12. 23.) 예정
2025년 1월 정근수당 지급 가능 여부

A. 지급X

▷ 지급요건인 전년도 6개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 해당X

Q. 첫째자녀 육아휴직(2023.6.1.~2025.5.31.) 후 복직(2025.6.1.)
2025년 7월 정근수당 지급 가능 여부

A. 지급O

▷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5년 6월분에 대하여 정근수당1/6만 지급

정근수당

Q. 셋째자녀 육아휴직(2023.6.1.~2025.5.31.) 후 복직(2025.6.1.)
2025년 7월 정근수당 지급 가능 여부

A. 지급O

▷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5.1.월~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2025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Q. 2025년 1월 정근수당 지급 가능 여부

A. 지급O

▷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25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다만, 육아휴직수당 18개월 지급되는 경우는 18개월까지 근무연수 산입

정근수당

[처분기간의 적용]

- 전년도 7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해당연도 1월 1일~6월30일까지의 처분기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 수가 처분 받은 개월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수만큼 감액하며, 처분 받은 날이 속한 지급대상 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정근수당

Q. 직위해제 3개월(24.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A. 처분 받은 날(24.6.16.)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24.7월)을 감액 지급(5/6)

Q. 24.6.1. 징계처분(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A. 24.7월의 정근수당 지급X, 25.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정근수당

Q. 직위해제 3개월(24.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A.

- ▷ 24.7월 정근수당: 실제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 25.1월 정근수당: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정근수당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지급 예시

① 임용권자가 다른 학교(기관)간의 기간제교사 근무기간(인정)

예시1)

- 2024년 3월 1일~8월 31일 A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
-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B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을 경우

2025년 1월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전액 지급

※ 타 시도교육청, 공·사립 구분없이 기간제교사 근무기간은 인정

정근수당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지급 예시

② 기간제교사로 근무 후 공·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미인정)

예시2)

- 2024년 3월 1일~8월 31일 A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
- 2024년 9월 1일~2025년 2월 28일 B학교 공립교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2025년 1월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4/6만 지급(A학교 근무기간 미인정)

예시3)

- 2024년 3월 1일~8월 31일 A학교 공립교원으로 근무 후 퇴직
- 2024년 9월 1일~2025년 2월 28일 B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을 경우

2025년 1월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4/6만 지급(A학교 근무기간 미인정)

※ 공무원 경력, 사립학교 정규교원은 기간제교사 경력과 상호간에 정근수당 근무기간 미인정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직계존속·비속	1명당 월 2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20,000원

• 부양가족 요건 : (1)+(2)+(3) 모두 충족해야 지급 가능함

-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불가)
-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가족수당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지급방법

1)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③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2)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휴직기간	지급액	상한액			하한액
		일반	아빠의달※2)	한부모※3)	
시작일~2개월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7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200만원	350만원	20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7개월째~12(18)개월 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160만원			

육아휴직수당

[아빠의 달, 18개월 추가 지급 기간 신청 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함)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이 '23.7.1.~'25.6.30.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4.10.1.~'24.12.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공무원의 수당 지급기간

⇒ '23.7.1.~'24.6.30.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제도 도입

('25.1.1.)전 육아휴직을 18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25.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X

▶ 공무원이 '24.4.1.~'25.9.30.까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5.10.1.~'25.12.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공무원의 수당 지급 시기

⇒ '24.4.1.~'25.3.31.까지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25.4.1.~'25.9.30.까지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시점('25.12.31.)의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수당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23.10.1.~'25.3.31.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방법

⇒ '23.10.1.~'23.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24.1.1.~'24.3.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5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24.4.1.~'24.9.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24.10.1.~'24.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후 기간에 대해 수당 미지급

'25.1.1.~25.3.30.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8개월까지 16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금액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특수업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해당하는 공무원 (월지급액)									
	지급금액	<table><tr><td>갑종</td><td>을종</td><td>병종</td></tr><tr><td>60,000원</td><td>50,000원</td><td>40,000원</td></tr></table>				갑종	을종	병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갑종	을종	병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지급방법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술 정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 -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 지급																										
	지급금액	<table><tr><th>대상</th><th>금액</th></tr><tr><td>5급 이상</td><td>50,000원</td></tr><tr><td>6,7급</td><td>30,000원</td></tr><tr><td>8급 이하</td><td>20,000원</td></tr></table>		대상	금액	5급 이상	50,000원	6,7급	30,000원	8급 이하	20,000원	<가산금> <table><tr><th>대상</th><th>금액</th><th>운전직렬</th><th>금액</th></tr><tr><td>기술사</td><td>50,000원</td><td>6급 ~ 7급</td><td>10,000원</td></tr><tr><td>기능장, 기사</td><td>30,000원</td><td>8급 ~ 9급</td><td>20,000원</td></tr><tr><td>산업기사</td><td>20,000원</td><td></td><td></td></tr></table>		대상	금액	운전직렬	금액	기술사	50,000원	6급 ~ 7급	10,000원	기능장, 기사	30,000원	8급 ~ 9급	20,000원	산업기사	20,000원	
대상	금액																											
5급 이상	50,000원																											
6,7급	30,000원																											
8급 이하	20,000원																											
대상	금액	운전직렬	금액																									
기술사	50,000원	6급 ~ 7급	10,000원																									
기능장, 기사	30,000원	8급 ~ 9급	20,000원																									
산업기사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간호직 공무원				
	지급금액	월 50,000원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	연구직 공무원(기록연구사)				
	지급금액	월 80,000원				
특수직무수당 (1.민원)	지급대상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 가. 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 나.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다.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지급금액	월 50,000원				
특수직무수당 (2.사서)	지급대상	사서직 공무원				
	지급금액	5급 이상: 월 40,000원 / 6급 이하: 월 30,000원				
특수직무수당 (4.의사)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금액	(월지급액)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120,000원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특수직무수당 (8.학교운영수당)	지급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과 병급 불가				
	지급금액	월 30,000원				

특수업무수당

연구 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장학관, 교육연구관(5급상당) : 월 22,000원 (4급상당 지급 안함) 장학사, 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연수기관: 원장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장학사·교원 80,000원 *(연수기관인 직속기관으로 파견 간 교사 포함)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1~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교직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월 2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1	지급대상 지급금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감-지급X(승진 교감 뺀거볼것) 월 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2	지급대상 지급금액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1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3	지급대상 지급금액	1) 특수학교 근무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2) 미감아가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3) 중학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4)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교원 (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 1) 해당자: 월 120,000원 2) 해당자: 월 70,000원 3) 해당자: 월 50,000원 4) 해당자: 월 3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4	지급대상 지급금액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200,000원

특수업무수당

교직수당 가산금5	지급대상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관련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교원
	지급금액	월 25,000원~50,000원(호봉별 상이) 추가가산금: 월 1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6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지급금액	월 3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7	지급대상	병설유치원 겸임 교장·교감, 통합운영학교 교장·교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지급금액	겸임교장: 월 100,000원 , 겸임교감: 월 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8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지급금액	월 4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9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지급금액	월 3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10	지급대상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지급금액	월 30,000원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모든 종류의 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단,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지급절차

총무과 또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의 업무대행 승인 절차를 받아야 지급 가능
(임의로 학교에서 판단하여 지급 불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따르는 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지급액

월 20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이 외출, 지각, 조퇴 등을 사용하여 1일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 제외, 단 시간외근무(초과)를 통해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인정
- 육아시간을 2시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경우 정액분 정상 지급
- 조기 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1시간 이상 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산정

시간외근무수당

70 교육공무원 초과근무

질의

교육공무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등으로 출근한 경우 1) 보충수업(별도 수당 지급)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4시간)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했다면 그 4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일수를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6 교원정책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학은 휴업일이며 법령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므로 41조 연수, 연가 등 학교장의 별도 허가가 없다면 수업이 없어도 출근해야 합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일이 출근일이라면 보충수업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정한 8 시간을 정상근무해야 하며, 출근일이 아니라면 보충수업 종료 후 퇴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 중이라도 출근일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시간외근무는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보충수업처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공제한 이후의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일 것이며, 그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출근일 계산의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보충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제목 내용

일반민원

교사 정규시간 내 방과후수업 시간외근무 정액분 관련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교사가 학기 중 정규시간 내 방과후수업 및 보결수업을 실시하고 수당을 받을 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산정하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 중 수당이 지급되는 방과후수업을 2시간 진행했을 시,
정규근무 이후 초과근무를 2시간 더 복무해야
그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15일 근무일수 중 1일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학기 중에는 수당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정규근무 8시간만 근무했다면
초과근무를 더 하지 않더라도 정액분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하는지요

감사합니다.

2024-10-02 17:58:31

1.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1AA-2409-0572023)

2.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교사)이 학기 중 정규 근무시간 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방과후수업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방과후수업 시간만큼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계산 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VI.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릅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정규근무시간 내의 방과후수업 시간만큼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계산 시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서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동 민원의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간외근무수당

[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내-중등교육과-17641(2018. 5. 31.)]

가.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 여부

- 1) 출장여비는 공무원이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 2) 출장여비와 별도로 출장기간 중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장 판단 하에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이동시간 및 개인 용무시간 제외)
- 3) 기타 시간외근무의 필요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요건 등은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 1)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을 말함
 - ▶ 불가피성: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 ▶ 사전초과근무명령: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 ▶ 시간확인 및 성과확인: 초과근무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가?

시간외근무수당

[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내-중등교육과-17641(2018. 5. 31.)]

2) 출장 시에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

가) 가능한 경우

-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권자의 현지 확인서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계획에 의해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활동 등을 위한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계획에 의해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활동 등에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
- 사전 계획에 의해 자매결연된 1교1복지시설에 학생을 인솔하여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
- 대회 참가 학생들을 인솔할 때, 일정 및 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주관 협회 등의 공문이 있는 경우
- 기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판단하여 출장과 함께 초과근무를 명령한 경우(근무명령 및 사전 계획 수립)

※ 위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동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또한 국외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음.

나) 불가한 경우

- 교(직)원 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직무·자율연수 또는 교(직)원 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경우
- 교(직)원이 문화공연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대회 참관 등에 참가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관련 없는 사설 단체의 현장체험학습 등에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

다. 출장 기간 중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는 개별 기관마다 근무여건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요건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3(별표12)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교육장, 직속기관장
나.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각급학교장
다.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5급 일반직 공무원 중 실장(과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금액

월 봉급액의 9%(「공무원 보수 규정」별표12에 따른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

지급방법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
지급금액	월 160,000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지급금액	▪ 설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월봉급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상의 월봉급액(기본급)

연가보상비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6년 이상	21일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을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

※ 연가가산 사례 : 공무상 병가 중인 공무원 최대 180일의 공무상 병가를 받은 A 공무원이 공무상 병가를 2년에 걸쳐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 공무상 병가의 경우 연도 구분없이 최대 180일 부여 가능하므로, 공무상 병가만 사용한 해가 있는 경우 다음해에 연가 1일을 가산 할 수 있음

연가보상비

Q. 연가일수 21일 / 권장 연가일수 10일 / 질병휴직(3개월)
사용가능한 연가일수&권장 연가일수&연가 보상일수 산정방법

A.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16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12*21= 9/12*21(소수점 이하 반올림)

A. 권장 연가일수 8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12*권장연가일수= 9/12*10(소수점 이하 반올림)

A. 연가 보상일수 8일

▷ 사용가능한 연가일수-권장 연가일수= 16-8

연가보상비

Q. 연가일수 21일 / 가산일수 1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2월 / 제외월 8월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연가 보상일수 산정방법

A.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18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12*22= 10/12*22(소수점 이하 반올림)

A. 연가 보상일수 6일

▷ 제외월 뺀 기간/12*미사용 연가일수 = 4/12*18(소수점 이하 절상)

직급보조비

지급금액

일반직	금액
3급(3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500,000원
4급(4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400,000원
5급(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250,000원
6급	185,000원
7급	180,000원
8,9급	175,000원
교장	450,000원
교감	300,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185,000원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월 300,000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5급(상당직 포함)공무원의 경우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의 경우 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참고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구 분		연봉제	호봉제	대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급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복수지 근무수당	위·형 근무수당	복 수 업무수당	초과 근무수당	관리 업무수당	정액 급식비	명품 휴가비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직위 해제	직무수행능력부족	7할	8할	2할감	1월 1/6감	2할감	2할감	2할감	2할감	2)	2)	2)	실적,×	2)	2)	3)	4)	2)
	적격심사 요구받은 고공단기)	6.3할	7.4할	3.6할	1월 1/6감	3.6할감	3.6할감	3.6할감	3.6할감	2)	2)	2)	실적,×	2)	2)	3)	4)	2)
	기타사유1)	4.2할	5.3할	5.7할	1월 1/6감	5.7할감	5.7할감	5.7할감	5.7할감	2)	2)	2)	실적,×	2)	2)	3)	4)	2)
징계	건 책	○	○	○	×	전 액 지 급												
	감 봉	1/3감	1/3감	1/3감	×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전 액 지 급					
	정 직	×	×	×	×	×	×	×	×	×	×	×	실적,×	×	×	지급기준일 정직×	4)	×
	강등(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	×	×	×	×	×	×	×	×	×	실적,×	×	×	지급기준일 강등×	4)	×
	해 임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실적,×	일할계산	일할계산	지급기준일 해임×	×	일할계산
	파 면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실적,×	일할계산	일할계산	지급기준일 파면×	×	일할계산
휴직	질병휴직(\$71①1호)	1년이하6할 1-2년이하 4할	1년이하7할 1-2년이하 5할	1년이하3할감 1-2년이하 5할감	5)	1년이하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3할감 1-2년이하 5할감	일 할,×	일 할,×	일 할,×	실적,×	일 할,×	일 할,×	지급기준일 휴직×	4)	일 할,×
	공무상질병휴직	○	○	○	○	○	○	○	○	○	○	○	실적,×	○	○	○	○	○
	병역휴직(법 \$71①3호)	×	×	×	복직후감액×	×	×	×	×	×	×	×	실적,×	×	×	×	4)	×
	천재지변 등 휴직(법\$71①4호)	×	×	×	×	×	×	×	×	×	×	×	실적,×	×	×	×	×	×
	국내외일시채용(고용)	×	×	×	복직후감액×	×	×	×	×	×	×	×	실적,×	×	×	×	×	×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4할 (2년이하)	5할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전액지급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일 할,×	일 할,×	일 할,×	실적,×	일 할,×	일 할,×	지급기준일 휴직×	4)	일 할,×
	법정의무수행(\$71①5호)	×	×	×	복직후감액×	×	×	×	×	×	×	×	실적,×	×	×	×	×	×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 등	×	×	×	×	×	×	×	×	×	×	×	실적,×	×	×	×	×	×
파견	육 아 휴 직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1년간 지급.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근무연수에 산입)																
	국 내 파 견	○	○	○	○	○	○	○	○	7)	7)	7)	8)	○	○	○	4)	○
	국외파견(30일이상)	○	○	○	○	○	○	○	○	×	×	×	×	○	×	○	4)	○
출장	국 내 출 장	○	○	○	○	○	○	○	○	○	○	○	○	○	○	○	○	○
	국외출장(30일이상)	○	○	○	○	○	○	○	○	×	×	×	×	○	○	○	6)	○
휴가	결근	연봉일액감	봉급일액감	○	○	○	○	○	○	일액 감	일액 감	일액 감	×	○	일액 감	○	×	일액 감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	○	○	○	○	○	○	○	○	○	×	○	○	○	○	○
	무급인 특별휴가	연봉일액감	봉급일액감	○	○	○	○	○	○	일액 감	일액 감	일액 감	×	○	일액 감	○	○	일액 감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성과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전문임기제)	○	○	○	×	×	×	×	×	×	×	×	○	○	○	×	○	○
퇴직	정년·명예퇴직, 조기·자진퇴직	10)	10)	○	○	○	○	○	○	○	○	9)	○	○	○	○	4)	○
대 기 발령		11)	○	○	○	○	○	○	○	×	×	×	×	×	×	○	4)	○

- 1)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감액비율 하향조정하여 지급
- 2) 월중에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 3)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 : 미지급
- 4)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바로 공제 / 휴직,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은 (해당연도 연가일수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12)로 산출된 일수를 연가일수를 연가로 부여함
- 5)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감액(실제 근무한 기간 15일 이상은 1월 계산, 15일 미만 계산X)
- 6)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 : 정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 근무 외무공무원의 해외주재기간,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등
- 7)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 인정(직무교육파견 등)
- 8) 1개월이상 파견시 정액×, 실적×
- 9) 1일 이상 출근시 정액분 모두 지급
- 10)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면직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또는 연봉을 전액지급
- 11) 4급 이상의 경우 관리업무수당 상당분 감액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Q.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의 경우,검임수당 지급 가능 여부

A. 지급X

▷ 공로연수 파견의 경우, 정년퇴직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로 파견 기간은 실제 검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로연수 파견 기간 중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업무수당 등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공로연수 파견자에게 검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의원면직

① 5년 이상 근속자(월 중 15일 이상 근무)

- 면직된 그 달의 **봉급 전액 지급**, 수당 등은 일할계산

② 5년 미만 근무자

- 면직된 그 달의 봉급, 수당 등 일할계산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의 경우, 사망일 다음날을 면직일로 처리 보수지급 방법은 의원면직과 동일

Ex) 5년 이상 근속자가 2024. 11. 15. 퇴직한 경우, 급여 산정방법

→ 15일 미만 근무(11. 1.~11. 14. 14일)이므로 11월 봉급 일할계산

→ 11. 16.자 퇴직인 경우, 11월 봉급 전액 지급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 정년퇴직·명예퇴직·공무상 사망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 등 전액 지급**
(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X
- ▷ 당연퇴직
 - 퇴직 월의 봉급, 수당 등 일할계산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인사변동자

- 해당 월의 급여 작업이 마감된 후에 휴직 또는 복직 등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익월 급여 작업 시 전월 급여에 대해 정산해야 하나 정산하지 않아 과소·과다 지급
- 해당 월의 승급 처리 지연·누락 등으로 본봉, 정근수당 등 과소 지급
- 징계사유 발생 시 보수에 반영하여야 하나 보수 전액 지급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보직(과장급)에서 무보직으로 인사이동 한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고 연봉을 재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연봉 과다 산정
-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경우, 연도 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의 잔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누락하여 과소 지급
- 전년도 성과연봉 중 가산액 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 결과에 적용되었던 등급을 적용하여야함에도 당해연도 보직에 해당하는 등급 금액을 적용하여 과다·과소 산정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당 지급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 지급
-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해 별거하는 가족의 부양가족수당 지급 시,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세대 분리 사유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나, 소명서 및 증빙서류의 확인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 후 수당 지급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는 지급사유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전액을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의 경우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과소 지급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교직수당가산금

- (교직수당가산금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교육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나 교장·교감에게도 지급
- (교직수당가산금2, 4) 신학기 보직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변동되었으나 누락되어 보직교사수당 및 담임수당이 과다·과소 지급
- (교직수당가산금3-가, 8, 9, 10) 특수,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 신규발령시 지급대상자에게 미지급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연가보상비

- 연도 중 퇴직자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 없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
- 12월 연가보상비 지급 이후, 추가로 연가 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아 과다 지급
-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원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나 미지급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기타

-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
-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과 학교운영수당은 특수업무수당으로 병급이 불가함에도 2개의 수당을 함께 지급하여 과다 지급
- (기술정보수당) 연도 중 승진한 기술직렬 공무원에게 승진 전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과소 지급하거나 신규발령 기술직렬 공무원에게 미지급

보수실태점검-주요지적사항

▷ 기타

- (기술정보수당) 공로연수 대상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나 과다 지급
- (학교운영수당) 기관근무자가 학교로 전보시, 학교운영수당 미지급하거나 학교근무자가 기관으로 전보시, 학교운영수당 과다 지급
- (직급보조비) 관용차량 사용 대상자의 지급보조비를 감액해야 하나 누락하여 과다 지급
- (위험근무수당) 급식소 근무로 인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방학 중 급식 미실시에 따른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 누락으로 과다 지급

연봉제

〈 연봉의 산출과정 〉

			성과연봉
			승진가급(승진 시) + 관리업무수당(인상액/상당액)
			처우개선분
		성과연봉	성과연봉 중 가산액
		승진가급(승진 시) + 관리업무수당(인상액/상당액)	관리업무수당(무보직 시 제외)
		처우개선분	
		승급가산액 (또는 성과연봉 중 가산액)	기본연봉
		관리업무수당(무보직 시 제외)	
성과연봉(해당 시)			
처우개선분			
전년도 12/31기준 급여연액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연봉에 합산하지 않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 이후 산출방법 변동없음)

- 1차년도는 전년도 12.31. 기준 급여 연액을 기초로 산출
- 2차년도는 전년도 연봉에 승급가산액 반영
- 3차년도 이후부터는 성과연봉 중 가산액 반영

연봉제

처우개선분 :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인상분과 이에 따른 연동수당 인상액을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인상 효과 반영

[보수지침 : 250쪽]

연도별 처우개선분	근무연수 10년 이상	연도별 처우개선분	근무연수 10년 이상
2019년	2.04%	2023년	1.7%
2020년	3.167%	2024년	2.5%
2021년	1.016%	2025년	3%
2022년	1.624%	2026년	3.5%

승진가급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간에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으로 조정

- 기본연봉 정기조정을 마친 후(=처우개선분까지 반영 후) 승진가급 가산
- 승진 후 무보직에서 보직으로 전보 시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예) 5급 무보직(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 없음) → 4급(관리업무수당 대상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함

- 5급 →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관리업무수당]산출 금액 [보수지침 : 191쪽]

① 5급 무보직 → 4급 : $\{(5\text{급 기본연봉} + \text{승진가급})/12\} \times 84\% \times 9\% \times 12\text{개월}$

② 5급 보직(과장급) → 4급 : $\{(\text{승진가급})/12\} \times 84\% \times 9\% \times 12\text{개월}$

[보수지침 : 191쪽]

연도별 승진가급	5급 → 4급	4급 → 3급	연도별 승진가급	5급 → 4급	4급 → 3급
2019년	7,567천원	8,303천원	2023년	8,015천원	8,794천원
2020년	7,807천원	8,566천원	2024년	8,356천원	9,167천원
2021년	7,887천원	8,653천원	2025년	8,607천원	9,442천원
2022년	8,015천원	8,794천원	2026년	8,909천원	9,772천원

연봉제

■ **5급** 공무원의 전보 시 보직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계산 [관리업무수당 대상: 5급 과장급, 4급 이상]

- 보직 → 무보직 : 관리업무수당 **기본연봉**에서 제외 (≠ 총 연봉에서 제외)
- 무보직 → 보직 : 관리업무수당 **기본연봉**에서 가산 (≠ 총 연봉에서 가산)
- 관리업무수당 가산/제외 과정 오류
 - : 전년도 기본연봉 정기조정 (= 처우개선분까지 반영) 후 관리업무수당 가산/제외
- 관리업무수당 계산 시 비율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 제외 시 : $[(\text{정기조정 후 기본연봉액}/12) \times 78\% \times 9\% \times 12\text{개월}]$
 - 가산 시 : $[(\text{정기조정 후 기본연봉액}/12) \times 84\% \times 9\% \times 12\text{개월}]$

연봉제(1차년도)

『예시로 보는 1차년도 연봉산출 방법』 ② 【호봉제 6급 ⇒ 연봉제 5급(※ 승진)】

2026.1.1.자 5급 승진으로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행정실장의 기본연봉은?

(전년도 12월 급여지급 기준 21호봉, 근무년수 23년, 차기 승급일 2026.9.1.)

※ 6급→5급 승진자의 경우, 전년도 12.31.에 5급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여 호봉재확정된 호봉값으로 연봉 책정함(전년도 2025.12.31.자 기준호봉(재확정)⇒ 20호봉/25년)

[산출식] 1차년도 기본연봉 : 2025년도 급여연액 + 2026년도 처우개선분 = 2026년 기본연봉

① 봉급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봉 + 정기승급예상 호봉과의 차액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봉액 : 5급 20호봉(2025년도 봉급액) 4,910,800원

- 정기승급예상 호봉 : 5급 21호봉(2025년도 봉급액) 4,980,200원

- 호봉과의 차액 : $4,980,200 - 4,910,800 = 69,400$

- 정기승급일 : 9월 1일 → 1호봉 승급액의 4/12

∴ 봉급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봉액 + 호봉과의 차액

$4,910,800\text{원} + \{69,400\text{원} \times 4/12 = 23,130\text{원 (원단위절사)}\} = 4,933,930\text{원}$

★ 봉급은 산출 최종금액에서 십원단위 반올림 → 4,933,900원

② 근무년수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3년 + 2년 = 25년

③ 급여연액 : 봉급연액($4,933,900\text{원} \times 12\text{월}$) + 정근수당($4,933,900\text{원} \times 50\% \times 2\text{회}$)

+ 정근수당가산금($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정근수당추가가산금($30,000\text{원} \times 12\text{월}$)

+ 명절휴가비($4,933,900\text{원} \times 60\% \times 2\text{회}$)

+ 관리업무수당(행정실장-“해당없음”) = 71,621,380원

④ 2026년도 처우개선분(근무년수 10년이상) 3.5% : $71,621,380\text{원} \times 3.5\% = 2,506,748\text{원}$

→ 2,506,740원(원단위 절사)

⑤ 급여연액과 당해연도 처우개선분 = $71,621,380\text{원} + 2,506,740\text{원} = 74,128,120\text{원}$

∴ 연봉은 항상 천원단위이므로 백원단위에서 절상(백원단위가 0원인 경우 절상없음) → 74,129,000원

연봉월액 : $74,129,000\text{원} \div 12\text{월} = 6,177,410\text{원 (원단위절사)}$

연봉제(1차년도)

2026년도 연봉책정 내역서						차기승급예정일		
						1월1일	1호봉 승급액	
■ 대상자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2월1일	11/12	
■ 연봉 책정일 : 2026.01.01.						3월1일	10/12	
■ 연봉책정 기준일 : 2025.12.31.						4월1일	9/12	
■ 기초 연봉 : 20 4,910,800						5월1일	8/12	
■ 1호봉 초과 보편 : 21 4,980,200						6월1일	7/12	
■ 1호봉 가산 산정 금액 : 23,133						7월1일	6/12	
■ 봉급 월액 : 4,933,900						8월1일	5/12	
■ 근무 연수 : (지방교육연수+2년) 25						9월1일	4/12	
■ 차기승급 예정일 : 9 월 1일						10월1일	3/12	
						11월1일	2/12	
						12월1일	1/12	
2025년도 급여연액	봉급월액	4,933,900	+	12	월	59,206,800	호봉차액	차기승급 산정
	정근수당	4,933,900	+	100	%	4,933,900	69,400	4
	경근수당가산금	130,000	+	12	월	1,560,000	차기승급에 따른 상수를 입력	
	관리업무수당	4,933,900	+	0	%	-		
	명절휴가비	4,933,900	+	120	%	5,920,680		
	2025년도 급여연액					71,621,380		
2026년도 처우개선분		연봉 인상분 (3.5% 적용)				2,506,740	일정단위조사	
2026년도 기본연봉액		2025년도 급여연액 + 2026년도 처우개선분				74,129,000	최종백원단위에서 결산	
2026년도 성과연봉액		2026년도 성과연봉					-	<=설파상여금 입력
2026년도 연 봉 액						74,129,000		
2026년도 연봉월액						6,177,410	일정단위조사	

연봉제(2차년도)

2) 2차년도

가) 산출식 : [전년도 기본연봉 + **승급가산액**(또는 **성과연봉 중 가산액**) + **처우개선비** + **성과연봉**

나) 전년도 기본연봉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차년도 기본연봉액(천원단위)

다) **승급가산액**

- 연봉 전환 이후 정기승급을 예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본연봉에 합산하는 금액
- 2017년도부터(2016년 연봉제 적용대상자 확대에 인하여 도입) **2차년도** 대상자에게 적용
- 전년도에 **성과연봉**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적용(⇒**성과상여금** 수령대상)
- 전년도에 성과연봉(C등급)을 받아 성과연봉 수령이 없는 대상자는 승급가산액 해당없음
- 연봉제 전환 시 **최고호봉** 도달자는 승급가산액 적용 제외, **연봉제 2년차에 1회만 적용**

호봉제	연봉제(1차년도) 적용	연봉제 2차년도
2022.12.31.기준 호봉	2023년도 정기승급 호봉	2024년도 정기승급 호봉
예) 5급 21호봉	5급 22호봉	5급 23호봉
	㉔ 호봉승급 차액×○/12	㉕ 호봉승급 차액×○/12

[승급가산액 산출식] (㉔ + ㉕) × 연동비율(%)

※ 연동비율[보수지침 248쪽]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5급 **과장급 이상(보직)** : 1,528%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5급 **과장급이 아닌 대상(무보직)** : 1,420%

		차기승급예정일		차기승급예정일	
① 21	4,638,300	1월 1일	1호봉 승급액	1월 1일	1호봉 승급액
② 22	4,699,000	2월 1일	1/12	2월 1일	11/12
③ 23	4,756,400	3월 1일	2/12	3월 1일	10/12
㉔ 20,230		4월 1일	3/12	4월 1일	9/12
㉕ 38,260		5월 1일	4/12	5월 1일	8/12
㉖ 830,550	승급가산액	6월 1일	5/12	6월 1일	7/12
㉔ = (② 금액 - ① 금액) × 4/12		7월 1일	6/12	7월 1일	6/12
㉕ = (③ 금액 - ② 금액) × 8/12		8월 1일	7/12	8월 1일	5/12
㉖ = (㉔ + ㉕) × 1,420% =		9월 1일	8/12	9월 1일	4/12
승급가산액		10월 1일	9/12	10월 1일	3/12
※ 보직일 경우 1,528%로 계산		11월 1일	10/12	11월 1일	2/12
		12월 1일	11/12	12월 1일	1/12
		호봉차액	차기승급 산정	호봉차액	차기승급 산정
		60,700	4	57,400	8
		② 금액 - ① 금액		③ 금액 - ② 금액	

연봉제 (3차년도)

3차년도 이후~

가) 산출식 : [전년도 기본연봉 + **성과연봉 중 가산액** +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나) 전년도 기본연봉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차년도 기본연봉액(천원단위)

다) (전년도)성과연봉 중 가산액 (약칭: 성과가산액 or 성과연봉가산액)

- 전년도 성과연봉의 지급단위(계급과 등급)를 전년도 기본연봉에 가산
- 전년도 성과를 기본연봉에 가산함으로써 기본연봉 상승[성과급적 연봉제 도입목적]
- 전년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던 상황이 중요!

cf) 중요① (전년도)성과연봉 중 가산액과 성과연봉의 비교

구분	(전년도)성과연봉 중 가산액	성과연봉
반영시기	기본연봉 조정 시	성과등급 인지 후
금액 산정기준	전년도 성과연봉의 계급과 등급	전년도 성과 산정 시 계급과 등급
예시	2026.1.1. 현재 4급이며, 2025년 받은 성과연봉은 5급 A등급 → 2025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은 5급, A등급의 [가산액 표]금액 반영	2026.1.1. 현재 4급이며, 2025.12.31.기준 5급(26.1.1.자 4급 승진) → 2026년 성과연봉은(25년은 5급이었으므로) 5급, A등급의 [성과연봉표]금액 반영

cf) 중요② 「성과연봉 중 가산액」과 「성과연봉」 반영 헛갈리지 않기

구분 \ 연도	2022년 (연봉 1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2.31.기준 계급	예시) 5급	5급	4급	4급	4급
성과연봉 중 가산액	-	-	5급 S등급	5급 A등급 (4급이 아님)	4급 B등급
성과연봉	-	(2022년 성과) 5급 S등급	(2023년 성과) 5급 A등급	(2024년 성과) 4급 B등급	(2025년 성과) 4급 S등급

※ 「성과연봉 중 가산액」은 '전년도(에 받은) 성과연봉 중 (등급과 계급을) 가산'하는 의미이므로, 전년도 계급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 상단에 2025년(해당 칸) 참고]

연봉제

V. 연봉 한계액(상한액)

- 총 연봉액(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성과연봉 중 가산액)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예) 2026년 총 연봉액 86,520천원(기본연봉 81,520천원 + 성과연봉 5,000천원)이 2026년 연봉상한액 86,520천원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연봉 5,000천원은 지급 가능
단, 2026년 기본연봉에 가산하는 성과연봉 중 가산액은 2025년도 연봉상한액 (86,520천원)을 넘지 않는 금액만큼 가산 [보수지침 242쪽]

[⇒년도별 직급별 연봉 상한액]

[보수지침 181쪽]

구분 연도	전문경력관 가군	5급(과장급 이외)	5급 과장급	4급	3급
2021	89,524천원	76,610천원	82,295천원	92,915천원	101,568천원
2022	90,978천원	77,855천원	83,632천원	94,424천원	103,218천원
2023	92,525천원	79,179천원	85,054천원	94,424천원	103,218천원
2024	94,839천원	81,159천원	87,181천원	98,431천원	107,598천원
2025	97,685천원	83,594천원	89,797천원	101,384천원	110,826천원
2026	101,104천원	86,520천원	92,940천원	104,933천원	114,705천원

감사합니다

급여

